

급수공사신청서	결	주무관	팀장	과장
	재			

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「창녕군 수도급수 조례」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급수 공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전위치				
급수종별			공사구분	신규, 증설, 관교체, 위치변경
월소요량			급수전 및 규격	m/m 개
건물허가유무	허가번호		허가년월일	건축주 (남, 여)      확인자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  
 성명 : (남, 여) (서명 또는 날인)  
 생년월일 :  
 연락처 :

창녕군수 귀하

참고사항

- 「창녕군 수도급수 조례」 제9조 따라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, 급수설비 중 옥외설치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.
- 공사비용 산출은 같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산출함.
-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음.
- 같은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함.
- 2개월이상 요금 체납 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음.
-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.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수용가가 책임진다.

접수 및 처리과정

처리기간			
접수	경유	최종	
수도과		수도과	접수→검토 및 현장확인 →설계→공사비납부→공사시행